

[별표 3]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(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) <개정 2019. 10. 4., 2020. 11. 4., 2022. 5. 3., 2022. 9. 29., 2023. 9. 14., 2025. 5. 20.>

1.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.

$$\text{감사인지정 점수} = \frac{\text{감사인 점수}}{1 + \text{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}}$$

2. "감사인 점수"는 매년 8월 31일(이하 "산정기준일"이라 한다)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(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가. 산정기준일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경력기간(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수(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의 30% 이내로 한정한다)는 경력기간이 2년 미만인 공인회계사(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말하며, 이하 이 별표에서 "공인회계사"라 한다)의 0.5인으로 간주하여 계산(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)한다.

나.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.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경력기간 40년 이상 | 경력기간 30년 이상 | 경력기간 20년 이상 | 경력기간 15년 이상 |
| 100 | 110 | 120 | 115 |
| 경력기간 10년 이상 | 경력기간 6년 이상 | 경력기간 2년 이상 | 경력기간 2년 미만 |
| 110 | 105 | 100 | 80 |

다. 나목에서 산출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모두 합한다.

라.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(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%를 초과하는 경우 30%로 본다). 다만,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(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)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.

- 1)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: 2%
- 2)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: 2%
- 3)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: 1%

마. 산정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된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.

- 1) 상위 15% 이내인 경우 : 10%(단, 100점 환산 시 85점 미만인 경우 5%)
- 2) 상위 15% 초과 30% 이내인 경우 : 5%(단, 100점 환산 시 8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)

바. 직전 사업연도("직전 사업연도"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)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(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)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차감한다.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| 40%이상 50%미만 | 30%이상 40%미만 | 20%이상 30%미만 | 10%이상 20%미만 | 10%미만 |
|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| 3% | 6% | 9% | 12% | 15% |

3. "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"는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. 이 경우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가. 지정받았지만 해제된 회사: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

나. 지정받았지만 제14조제9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회사: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

다.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된 회사: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

라. 제15조제5항제4호의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: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일까지만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| 10조원 이상 | 5조원 이상부터 10조원 미만까지 | 2조원 이상부터 5조원 미만까지 | 5천억원 이상부터 2조원 미만까지 | 5천억원 미만 |
| 가중치 | 5배 | 4배 | 3배 | 2배 | 1배 |